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4건)

- ① 한국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역대 최고 순위, '기업인이 기업을 경영할 때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 5년 연속 개선,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 ('21.11.26)
- ② 국민권익위, 여성경제인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 가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경영활동 애로사항 토로('21.11.3)
- ③ 국민권익위, 올해 3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차 매각방식 합의 주도해 조정안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 결실로 이어져 ('21.11.10)
- ④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에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으로 부정이익 환수 못하는 사각지대 없어져('21.11.11)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렴정책 일반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한국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역대 최고 순위

'기업인이 기업을 경영할 때,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 5년 연속 개선,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

('21.11.26., 국민권익위)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이 인·허가 등의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5년 연속 낮아졌다.

최근 발표된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순위인 194개국 중 21위(100점 만점에 21점, 낮을수록 뇌물위험 없음)를 기록했다.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는 그동안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대비돼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7년 33위, 2018년 25위, 2019년 23위, 2020년 22위에 이어 올해 21위로 5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뇌물 위험도는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 매우 낮음(18개국), 낮음(35개국), 보통(81개국), 높음(49개국), 매우 높음(11개국)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는 미국 '랜드연구소'와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가 공동 개발했다.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이며, 델파이 기법 개발 및 계획기반예산(PPBS) 제안 등 행정·경영관리 및 사회조사 연구에 대한 전문 연구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최근 몇 년간 CPI 등 다른 국제지표에서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며, “이런 진전은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확산해 청렴국가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와 위상을 정착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의 반부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평가주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와 CPI 등 국제 부패평가의 한계와 보완점을 논의하고 개선해 국제적 반부패 정책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1년 TRACE 뇌물위험매트릭스 발표 결과

〈 Bribery Risk Matrix 개요 〉

- 발표기관 : TRACE International
 - ※ 국제적인 뇌물반대 기업 협회로, 제3자 위험관리 솔루션을 제공. 회원으로는 500개 다국적 기업이 있으며, 본부는 미국에 있고, 5대륙에 지부가 있음
- 발표배경 : 전 세계 기업 활동을 원하는 기업인들에게 해당 국내 사업시 뇌물 위험 수준 정보를 제공
 - ※ 2014년에 랜드연구소(미국의 대규모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처음 발표, 2018년에 안정화
- 조사대상 : 194개국
- 조사방법 : 뇌물의 성격을 4개의 위험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별로 2-3개의 하위부문으로 나눈 다음, 각 하위부문은 복수의 공개데이터를 활용하여 점수화
 - ※ ① 기회: 정부와의 상호작용(상호작용, 뇌물경험, 재량) ② 방지: 공식·비공식적 뇌물 억지 수단(억지력, 법집행) ③ 투명성: 행정절차 및 공직의 투명성(행정절차, 이해관계) ④ 감시: 언론과 시민단체

- '21년 발표 결과 한국은 **21점**(0점 뇌물위험없음)으로 **194개국 중에서 21위**
 - ※ ('18년) 25위(24점), 위험도 낮음 ⇨ ('19년) 23위(24점), 위험도 낮음 ⇨ ('20년) 22위(20점), 위험도 매우 낮음 ⇨ ('21년) 21위(21점), 위험도 낮음
- 동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뇌물위험수준은 **낮음(low)**에 해당
 - ※ 매우낮음(18개국) / 낮음(35개) / 중간(81개) / 높음(49개) / 매우높음(11개)
- 한국의 '21년 결과에서 가장 좋은 점수는 **정부와의 상호작용**(9점), **이해관계**(민원분야의 투명성 및 건전성, 14점)이며, 가장 낮은 점수는 **억지력**(뇌물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36점) 부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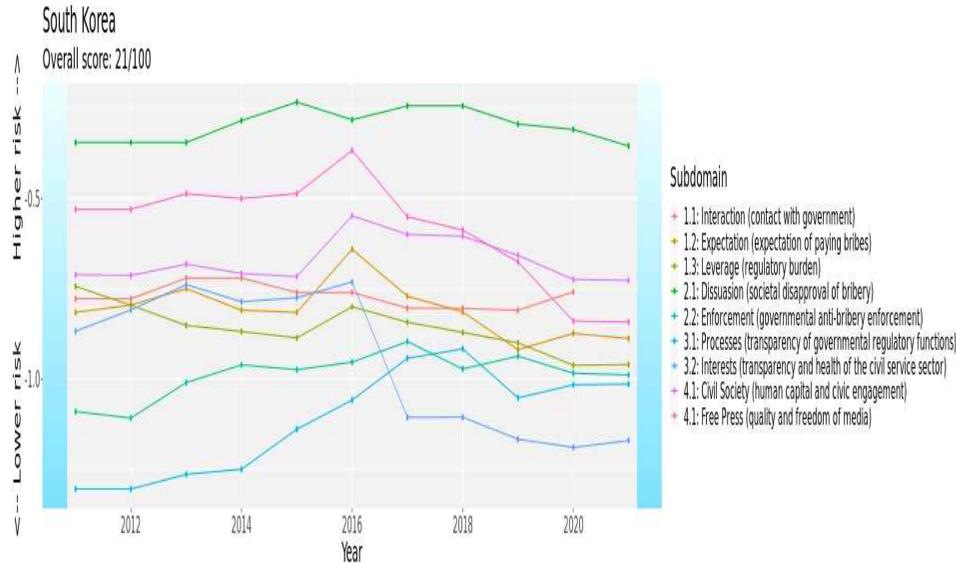
※ 억지력 부문의 점수는 작년에 비하여 향상되었음 ('20년) 46점 ⇨ ('21년) 36점

<한국 지표>

연도	총계		①기회				②방지			③투명성			④감시		
	순위	점수	평균	상호작용	뇌물경험	제량	평균	사회억지력	법집행	평균	행정절차	이해관계	평균	언론	시민
21년	21	21	17	9	35	18	31	36	26	20	26	14	23	20	28
20년	22	20	16	10	31	17	35	46	27	15	19	10	23	20	28
19년	23	24	25	16	37	22	27	26	35	20	23	20	24	20	28
18년	25	24	25	-	-	-	25	-	-	22	-	-	26	-	-

※ 2018년에는 세부지표 점수가 발표되지 않음

※ 가중치: ①기회×0.400 + ②방지×0.150 + ③투명성×0.225 + ④감시×0.225



참고 1

TRACE 뇌물위험매트릭스 개요

□ 발표 기관 : TRACE

※ 국제적인 뇌물반대 기업 협회로, 제3자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업체. 회원으로 500개 다국적 기업이 있으며, 본부는 미국에 있고, 5대륙에 지부

□ 개발 배경

- 글로벌 사업을 원하는 기업인들에게 국가별로 공무원의 뇌물 요구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 ※ 미국의 대규모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와 공동개발
- 뇌물 가능성은 매우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패의 다차원적 특성을 반영하고, 각국별 부패의 특징적 요소를 포괄

□ 방법론

- 뇌물의 성격을 4개의 위험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별로 2-3개의 하위부문으로 나눈 다음, 각 하위부문은 복수의 데이터를 활용
 - ① 기회(Opportunity) : 기업과 공무원간 상호관계로, 정부와의 접촉, 뇌물제공 기대치, 규제 부담으로, 기업뇌물위험의 핵심 지표
 - ② 방지(Deterrence) : 공적인 정부의 법집행 수단과, 사회적 태도 등 비공식적으로 뇌물을 억지할 수 있는 요인을 의미
 - ③ 투명성(Transparency) : 정부와 공직의 투명성으로, 정부예산이 공개되는지, 공무원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규제가 있는지를 의미
 - ④ 감시(Oversight) : 시민사회 감시 역량으로, 언론자유와 시민 참여의 범위에 대한 정보에 근거
- 정부와 기업인과 상호관계인 '기회' 부문은 국제 규제기관 인터뷰, 다양한 전문가, 자체 경험을 기반으로 정보 신뢰도가 높아 가중치가

높고, '방지' 부문은 데이터 부족으로 가중치가 가장 낮음

※ 총점계산 : ①기회×0.400 + ②방지×0.150 + ③투명성×0.225 + ④감시×0.225

부문	하위부문	원천 데이터
①기회 Opportunity (정부와의 상호작용)	상호작용 Interaction (정부와의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의 국가 소유(V-Dem) · 전기 신청 절차(WB) · 건설허가 취득 절차(WB) · 부동산 등록 절차(WB) · 창업 절차(WB) · 수출시 서류요건 검사시간(WB) · 수입시 서류요건 검사시간(WB) · 과세공무원 평균 방문 횟수 또는 요건 서류(WB) · 정부/국가가 10% 이상 소유권을 가진 기업 비율(WB) · 정부의 규제요건 대응관련 간부 소요시간(WB)
	기대치 Expectation (뇌물제공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직의 뇌물 및 부패 거래(V-Dem) · 입법부 부패행위(V-Dem) · 공공부문 부패행위(V-Dem) · 뇌물수위(선물·비공식 지출이 요구된 공적거래 비율)(WB) · 뇌물사건(기업의 최소회이상 뇌물요구 경험 비율)(WB) · 부패사례(WEF) · 민사가 뇌물에서 자유로운지(WJP) · 행정부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 이용(WJP)
	수단 Leverage (규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소요일(WB) · 건축허가소요일(WB) · 부동산등록 소요일(WB) · 창업소요일(WB) · 통관 효율성(WEF) · 정부규제 부담(WEF) · 항만서비스 효율성(WEF) · 정부규제가 부적절한 영향력없이 적용 집행되는지(WJP)
②방지 Deterrence (뇌물방지 및 법집행)	억지력 Dissuasion (사회내 뇌물 불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정책 및 관행의 다양한 인구계층의 동등한 대우 보장 여부(프리덤하우스) · 사회집단별 국영사업기회 접근(V-Dem) · 평등 대우 및 차별 부재(WJP) · 유권자의 뇌물수수 주기(세계가치조사) · 세금회피가 허용되는지(세계가치조사) · 뇌물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세계가치조사) · 포스트 물질주의 지표(세계가치조사)

	법집행 Enforcement (정부의 뇌물방지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정책의 효과성(베텔스만재단) · 사법부 독립성(베텔스만재단) · 직권남용 기소율(베텔스만재단) · 지역 협력(베텔스만재단) · 공직자 부패에 대한 안정장치의 견고성 및 효과성 (프리덤 하우스) · 공공부문 절도(V-Dem) · 사법부 독립성(WEF, 프리덤하우스) · 조직범죄(WEF) · 형사재판(WJP) · 공무원이 비리로 징계되는지(WJP)
③투명성 Transparency (정부와 공직 투명성)	절차 Processes (정부 규제기능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작용의 투명성 및 공개성(프리덤 하우스) · 예산공개지표(국제예산파트너십) · 전자정부개발지표(UN) · 예측가능한 투명한 법령(V-Dem) · 예산 투명성(WEF) · 법률과 정부자료 공개(WJP) · 정보권(WJP)
	이해관계 Interests (공직부문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의 급여(V-Dem) · 고위급 횡령과 절도(V-Dem) · 투자자 투명성(WB) · 이해충돌 규제(WEF) · 감사회계 기준의 강도(WEF) · 정부권한이 외부감사 점검에 효과적으로 제어되는지(WJP)
④감시 Oversight (시민사회 감시 역량)	언론 자유 Free Press (언론의 수준과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의 자유(베텔스만재단) ·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프리덤하우스) · 세계언론자유지표(국경없는기자단) · 학계의 비판의식(V-Dem) · 정부의 인터넷 검열 실상(V-Dem) · 인쇄/방송 언론의 비판의식(V-Dem) · 인쇄/방송 언론의 관점(V-Dem) · 의견·표현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는지(WJP)
	시민사회 Civil Society (인적자원과 시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참여(베텔스만재단) · 정치 참여(베텔스만재단) · 인적개발지표(UNDP) · 시민단체 참여 환경(V-Dem) · 참여 사회(V-Dem) · 독립적 비정치조직의 참여(V-Dem)

	· 시민 참여(WJP) · 정부권한이 비정부기구의 감시대상인지(WJP)
--	--

※ 동 데이터 소스는 2021년 자료. 2020년보다 프리덤하우스의 5개의 자유 지표 추가

<공개 데이터 원천 자료>

No	발표기관	소스명	사용건수	설명
1	V-Dem Institute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	민주주의 다양성	16	202개국. 50% 공식통계, 50%는 전문가 평가
2	WB(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11	190개국 12,500명 전문가질의
		기업조사	5	143개국 146,000개 기업조사
3	WJP(세계사법프로젝트)	법치 지표	12	113개국 일반인설문, 전문가질의
4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지수	9	140개국 기업인 설문
5	베텔스만재단	변혁 지수	7	129개국 전문가 의견
기타	세계가치조사(4), 예산공개지표(1), 국경없는기자단(1), 프리덤하우스(5), 전자정부지표(UN, 1), 인간개발지수(UNDP, 1)			

참고 2

TRACE 국가 순위 및 점수 (2021년, 194개국) *0점 뇌물위험없음

※ 뇌물위험도 : 매우낮음(1~18위), 낮음(19~53위), 중간(54~134위), 높음(135~183위), 매우높음(184~194위)

순위	국가	점수	기회	방지	투명성	감시
1	Denmark	2	1	1	6	1
2	Norway	5	8	4	3	2
3	Sweden	7	10	9	1	5
4	Finland	7	13	2	2	5
5	New Zealand	8	5	7	3	17
6	Germany	12	14	8	14	11
7	Netherlands	14	17	8	12	14
8	Switzerland	14	15	11	18	10
9	United Kingdom	14	14	21	11	13
10	Canada	16	19	14	11	15
11	Estonia	16	18	17	13	13
12	Ireland	16	24	14	8	11
13	Iceland	16	16	17	16	16
14	Australia	16	19	12	11	20
15	Taiwan	17	18	23	13	14
16	Luxembourg	17	21	17	14	14
17	Belgium	17	27	8	11	13
18	Japan	19	19	11	19	25
19	Singapore	20	2	22	16	54
20	Austria	20	26	13	20	15
21	South Korea	21	17	31	20	23
22	Andorra	21	24	15	21	21
23	United States	22	21	35	18	21
24	Lithuania	22	24	27	20	19
25	Hong Kong	22	7	29	26	42
26	France	23	24	33	17	19
27	Spain	25	29	23	22	22
28	Portugal	26	27	24	27	23
29	Georgia	26	19	38	28	29
30	Uruguay	26	40	9	26	14
31	Latvia	28	32	32	23	23
32	Slovenia	28	36	24	24	21
33	Chile	28	34	29	25	21
34	Cyprus	29	34	30	27	23
35	Italy	30	35	30	28	22
36	Israel	30	34	30	22	30
37	Costa Rica	30	43	18	31	14

38	Puerto Rico	31	50	33	16	12
39	Czech Republic	31	38	31	31	20
40	Liechtenstein	31	38	17	48	13
41	Greece	33	38	39	31	23
42	Malta	34	38	32	33	28
43	Mauritius	34	34	36	41	27
44	Marshall Islands	34	30	19	68	19
45	Slovak Republic	35	41	44	33	19
46	Poland	35	35	38	37	32
47	Armenia	36	30	45	46	29
48	San Marino	36	38	24	55	21
49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36	36	26	48	31
50	Barbados	37	41	34	45	23
51	St. Lucia	37	36	22	57	29
52	Jamaica	37	42	44	42	19
53	St. Kitts and Nevis	37	38	29	55	24
54	United Arab Emirates	38	7	52	45	75
55	Botswana	38	39	30	50	30
56	Antigua and Barbuda	38	41	29	48	30
57	Micronesia	39	38	19	69	22
58	Seychelles	39	40	36	41	36
59	South Africa	39	47	58	29	23
60	Dominica	39	40	36	45	35
61	Trinidad and Tobago	40	45	44	45	22
62	Bhutan	40	37	40	40	44
63	Croatia	40	44	49	37	29
64	Grenada	40	38	28	63	29
65	Malaysia	40	34	54	38	44
66	Namibia	40	42	45	47	28
67	Cape Verde	41	40	34	50	38
68	Tunisia	41	41	50	47	29
69	Romania	41	48	39	40	31
70	Bahamas	41	47	41	49	23
71	Bulgaria	41	47	49	33	34
72	Panama	42	43	54	44	31
73	Palau	42	55	19	64	14
74	Samoa	43	45	19	67	30
75	Argentina	43	56	44	39	23
76	Senegal	43	45	45	51	30
77	Ghana	43	50	44	50	24
78	Vanuatu	44	48	33	48	38

79	Peru	44	53	54	37	28
80	Montenegro	44	47	45	44	38
81	North Macedonia	44	46	48	45	38
82	India	44	47	52	36	43
83	Sao Tome and Principe	45	42	42	56	41
84	Colombia	46	50	55	37	42
85	Jordan	46	38	49	50	55
86	Thailand	46	37	55	47	56
87	Indonesia	46	53	59	41	32
88	Dominican Republic	46	51	57	49	29
89	Mongolia	47	59	44	42	31
90	Tonga	47	47	30	68	36
91	Brazil	47	57	52	40	33
92	Sri Lanka	47	48	57	48	38
93	Kosovo	47	43	54	58	39
94	Fiji	47	47	57	47	41
95	Kuwait	48	51	55	38	46
96	Lesotho	48	42	48	68	38
97	Benin	48	46	40	69	38
98	Morocco	49	42	54	53	52
99	Burkina Faso	49	50	57	61	30
100	Suriname	49	50	57	61	30
101	Kiribati	49	66	19	67	22
102	Solomon Islands	49	54	39	62	35
103	Hungary	49	47	58	51	46
104	Ukraine	50	54	60	47	38
105	Brunei Darussalam	50	41	59	55	54
106	Serbia	50	47	63	51	45
107	Rwanda	50	36	52	56	67
108	Mexico	50	53	72	36	44
109	Ecuador	50	56	57	51	34
110	Albania	50	55	54	51	39
111	East Timor	50	56	50	58	33
112	Nepal	51	49	63	57	39
113	Guyana	51	56	58	52	36
114	Oman	51	32	67	55	70
115	Moldova	51	53	67	46	42
116	Malawi	51	59	54	54	33
117	El Salvador	51	54	56	58	37
118	Maldives	52	49	51	64	45
119	Philippines	52	53	75	44	42

120	Kenya	52	55	66	48	41
121	Saudi Arabia	52	31	62	57	78
122	Paraguay	52	53	67	56	37
123	Qatar	52	31	57	66	73
124	Gambia	52	47	55	75	38
125	Belize	53	51	51	76	33
126	Niger	53	45	56	76	41
127	Kazakhstan	53	46	61	46	67
128	Tanzania	54	53	49	60	51
129	Turkey	54	39	66	55	70
130	Papua New Guinea	54	60	52	59	40
131	Guatemala	54	52	76	58	40
132	Bosnia and Herzegovina	55	59	56	60	42
133	Togo	55	44	65	78	45
134	Russian Federation	55	48	72	50	62
135	China	56	36	59	61	83
136	Myanmar	56	49	65	66	51
137	Kyrgyz Republic	56	59	67	56	43
138	Bahrain	56	39	77	54	74
139	Sierra Leone	56	63	59	64	35
140	Azerbaijan	56	42	60	61	75
141	Ivory Coast	57	56	60	68	45
142	Mozambique	57	54	63	67	50
143	Vietnam	57	50	56	61	68
144	Belarus	58	46	61	68	66
145	Lebanon	58	59	76	69	35
146	Honduras	59	56	77	59	51
147	Uzbekistan	59	52	70	58	64
148	Bolivia	59	64	61	66	41
149	Zambia	59	53	71	70	50
150	Pakistan	59	60	64	67	48
151	Uganda	60	62	70	58	50
152	Guinea	60	56	68	74	47
153	Nigeria	60	70	64	61	39
154	Swaziland	60	51	65	68	66
155	Liberia	61	69	58	70	38
156	Madagascar	61	67	63	64	45
157	Zimbabwe	61	61	66	63	55
158	Mali	61	62	74	70	42
159	Guinea-Bissau	61	60	66	76	46
160	Comoros	61	54	66	82	51

161	Ethiopia	62	59	62	74	57
162	Iraq	63	62	79	71	46
163	Egypt	63	54	63	65	77
164	Djibouti	63	48	74	77	70
165	Algeria	65	64	62	76	56
166	Gabon	65	71	74	70	43
167	Bangladesh	65	71	65	59	61
168	Sudan	66	56	93	76	54
169	Cameroon	67	62	82	76	55
170	Nicaragua	67	60	72	78	64
171	Mauritania	67	60	82	87	51
172	Angola	68	72	69	75	51
173	Haiti	68	67	89	79	44
174	Afghanistan	68	70	84	77	45
175	Libya	68	67	69	87	52
176	Tajikistan	69	62	70	73	75
177	Iran	69	64	72	71	76
178	Cuba	70	71	63	68	77
179	Central African Republic	71	67	91	84	51
180	Burundi	71	56	85	88	73
181	Dem. Rep. of the Congo	72	71	84	84	53
182	Laos	72	63	73	76	85
183	Republic of the Congo (Brazzaville)	73	68	85	83	62
184	Chad	75	70	89	93	55
185	Syria	76	69	93	72	83
186	Cambodia	77	80	82	77	68
187	Equatorial Guinea	79	67	93	94	74
188	Yemen	79	70	82	100	72
189	South Sudan	80	71	96	95	72
190	Somalia	80	76	94	97	63
191	Venezuela	81	82	80	93	66
192	Eritrea	81	60	97	97	92
193	Turkmenistan	86	91	86	75	89
194	North Korea	94	100	100	74	100

국민권익위, 여성경제인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 가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경영활동 애로사항 토로

(2021. 11. 3., 국민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본회와 시도 지회장 등을 만나 여성경제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여성경제인들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전현희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애로와 고충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여성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판로 개척 분야에 대한 고충이 많이 제기됐다. 특히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비율, 수의계약 가능범위 상향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아울러 육아 부담이 고용률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 및 보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 중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은 접수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은 제도개선을 검토해 그 결과를 여성기업인들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 한 경제연구기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OECD 37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이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에서도 2019년 기준으로, 여성기업의 수는 277만 2천개로 전체 중소기업 수의 40.2%이나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27.9%, 매출액은 전체 중소기업의 17.9%에 머무르고 있다. 업종도 도·소매업(26.3%), 숙박·음식업(17.8%), 부동산업(22.5%)이 주를 이룬다.

한편 올해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고충 해소에 역량을 집중했고, 지난달 21일 경총회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2018년부터 기업고충 전담조직을 신설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고충과 애로사항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여성기업인들의 고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정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 결실로 이어져

국민권익위, 올해 3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방식 합의 주도해

(2021. 11. 10., 국민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36,642㎡) 매각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이 ‘이건희 기증관’ 건립 결실로 이어졌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주)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참여한 가운데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에 대한 3자 매각방식의 조정안을 마련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국민권익위가 중재한 3자 매각방식은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대한항공과 LH가 체결하고, 서울특별시와 LH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매매가격은 (주)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에 대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 심사를 거친 가격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된다.

대금지급은 LH가 매매대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한항공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서울특별시 소

유의 시유지 교환 완료시기에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매매를 위한 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서울특별시와 LH 간 교환할 시유지는 강남구 소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결정돼 교환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의 조정대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가 서울특별시에 매각되면 이곳에 문체부장관과 서울시장이 10일 협약식을 갖고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근현대 미술관이 건립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송현동 부지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매우 뜻깊은 일이다.”면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의 조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로 어려운 조정을 통해 ‘이건희 기증관’ 결실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에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으로 부정이익 환수 못하는 사각지대 없어져

(‘21.11.11., 국민권익위)

앞으로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과 관련된 직무의 부정청탁 행위가 근절되고, 국민권익위가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이 이를 알지 못해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와 구조금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주요내용 >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의 최대 5배)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은 이를 알지 못해 부정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시 등 10개 기관은 18건의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하여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지 않았음(‘20.2월)

국민권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공공재

정 부정청구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도에는 453억 원, 2021년도 상반기에는 175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직자의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정환수법 통과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